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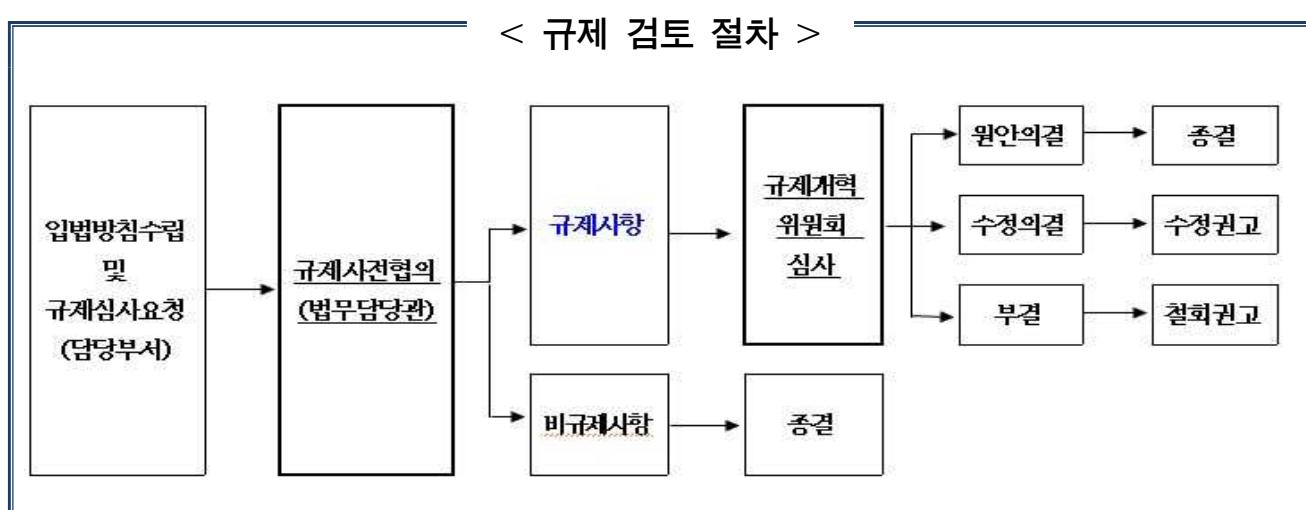
가. 개 관

- 규제심사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·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,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서, 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절차이다.

나. 심사대상

- 규제심사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가 자치법규(조례·규칙) 뿐만 아니라 고시·공고 등(이하 “자치법규 등”)에 규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으로 한다.

다. 심사절차



① 규제 사전검토(협의) 요청

- 자치법규 등의 제·개정을 추진하는 입법부서는 먼저 법무담당관에 규제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. (통상 규제사전검토는 앞서 「3-① 자치법규 입법 절차 흐름도」에서 본 바와같이 입법예고 심사 및 관계부서 협의 등과 함께 일괄 공문으로 요청)

② 규제 사전심사

- 법무담당관은 해당 자치법규 입법안 등에 규제심사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부서에 통보하게 된다.
- (규제심사 대상이 있는 경우) 법무담당관으로부터 규제심사 대상이 있다는 내용의 규제사전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입법부서는 입법예고(또는 행정예고)에 앞서 규제심사 대상에 대해 “규제영향분석서”를 작성하여야 하며, 이를 입법예고(또는 행정예고) 시 제·개정안과 함께 공고해야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

- 입법부서에서는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기간 중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기관(부서)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, 부서 자체심사를 개최하여야 하며, 그 결과 등을 종합한 다음 “규제심사요청서”, “규제심사체크리스트” 등을 작성하여 입법예고(또는 행정예고) 기간 종료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요청을하여야 한다.(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7조)

라.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

- 입법부서에서 입법예고, 행정예고 결과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제요소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, 규제심사 대상으로 판단된 제·개정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(서울시 기준, 총 15인) 중 과반수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하며, ‘원안의결’, ‘개선권고’, ‘철회권고’ 등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.
- ‘원안의결’은 규제의 적정성, 합리성,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으로서 입법부서는 제·개정안에 대해 그대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‘개선권고’ 또는 ‘철회권고’는, 입법안에 담고 있는 규제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한다는 것이다.

- 입법부서는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·철회 권고 의견에 대해 수용할 경우, 수용에 따른 조치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고 후속절차에 나아가면 되고,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 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.

마. 기타(후속절차, 긴급한 규제의 신설·강화 심사)

- 규제심사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후속절차 (법무담당관에 법제심사를 의뢰 등)를 진행하면 되고, 규제심사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다음 후속절차를 진행하면 된다.
 -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안을 보완하고 그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(조례, 규칙의 경우) 또는 중요문서 심사(훈령, 예규 등의 경우)를 의뢰하여야 한다.
-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 사전검토 요청절차, 규제영향분석서 작성, 의견수렴 절차, 부서 자체심사 등을 생략하고 곧바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가 있다. 이 때 입법부서는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“규제영향분석서”를 제출하여야 한다. (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13조)

「행정규제기본법」 상 정의 (법 제2조 관련)

- “행정규제”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(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·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.
- “행정기관”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·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- “규제영향분석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·경제·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·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.

참 고

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통보 (법무담당관 → 입법부서)

① 규제사항이 없는 경우

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, '서울안전앱'으로 지켜주세요!

I·SEOUL·U
내와 나의 서울

서울특별시



수신
(경유)

국제교류담당관

제목

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(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1. 국제교류담당관-2471(2018.3.12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귀 부서에서 행정입법 추진 중인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이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,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규제사전검토서 1부. 끝.

법무담당관

주무관

규제개혁팀장

법무담당관

협조자

시행 법무담당관-0000 () 접수 ()

우 04524 서울특별시 종구 세종대로 110 (태평로1가) / <http://www.seoul.go.kr>

전화 02-2133-0000 / 전송 02-2133-0821 / abcdefghijklmnop@seoul.go.kr / 부분공개(5)

② 규제사항이 있는 경우 ⇒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첨부

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, '서울안전앱'으로 지켜주세요!



서울특별시



수신 **공원녹지정책과장**

(경유)

제목 **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**(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)

1. 공원녹지정책과-4182(2018.3.19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규칙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·강화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,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 심사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-

가. 규제조항 : 1건

규제심사 대상 : 총 1건

안 별표3 :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(제8조 관련)

규제심사대상 아님

안 제10조, 별표 4 : 입장료 등의 환불

규제심사대상

나.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

- 1) 중요규제(비중요규제)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후 공고
- 2) 이해당사자(관련단체)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
- 3)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,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

다.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

-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,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,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안

- 붙임 1. 규제사전검토서 1부.
2. 규제심사체크리스트(서식) 1부.
3. 규제영향분석서(서식) 1부
4. 규제심사요청서(서식) 1부. 끝.

법무담당관

주무관

규제개혁팀장

법무담당관

협조자

시행 법무담당관-0000 () 접수 ()
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(태평로1가) / <http://www.seoul.go.kr>
전화 02-2133-0000 / 전송 02-2133-0821 / abcdefghijklmnop@seoul.go.kr / 부분공개(5)